

#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(대안)

의 안 번 호	887
------------	-----

제 안 연 월 일 : 2012년 6월 21일  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대안의 추진경위

- 2012년 2월 3일 이정찬 · 이미성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6호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」과 2012년 4월 4일 정용림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4호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·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**3. 대안의 주요내용**

- 가. 서울특별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(안 제 1조).
- 나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 및 노숙인시설,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.
- 다.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,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 함(안 제3조).
- 라.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5조).
- 마.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함(안 제6조).
- 바.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함(안 제7조).
- 사.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 함(안 제8조).
- 아. 노숙인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자. 상담교육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(안 제12조).
- 차.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함(안 제13조).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- 나.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- 다.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2. “노숙인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 - 가. 종합지원센터 : 노숙인 등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시설
  - 나. 일시보호시설 :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
  - 다. 자활시설 :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

업상담·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 라. 재활시설 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마. 요양시설 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바. 급식시설 : 노숙인 등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사. 진료시설 : 노숙인 등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
- 아. 쪽방상담소 : 쪽방지역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

3. “노숙인시설 종사자”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, 상담,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,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, 보호와 재활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

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·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
3. 노숙인 등의 보호·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
4.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
5.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
7.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
8. 여성·장애·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
9.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10.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
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노숙인 등의 수, 거주지, 거주 형태,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
2.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
3. 노숙인 등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##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

### 4.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숙인정책자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
  - 2.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 - 3.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노숙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, 노숙인 관련 기관, 단체, 시설관계 인사, 기타 노숙인 관련 학계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3.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·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
4. 노숙인 등의 자활 ·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
5.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6.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7. 여성 · 장애 · 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
8.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
9.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
10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

**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 · 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·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 ·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용의 지원)**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

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2조(교육)**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인권의 보장)** 시장은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